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5. 2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6. 10

다. 의안번호 : 제 99-19 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제공과 함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 사무의 간소화는 물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Cost Less)으로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

나. 주요골자

○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군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은 선정위원회 설치(제6조)

○ 수탁기관 선정후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제9조)

- 수탁기관의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시 및 조치와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10조, 제12조)

3. 검토의견

- 정부는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미 행정기구중 기능쇠퇴, 중복유사기구 등을 통합하여 대과주의를 실현하고 의사결정 단계축소를 위하여 “계”제를 폐지하는 등, 군 조직을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조직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감축관리로 간소화 조직구현을 위한 조치로 자치단체 공무원이 처리하던 것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제공과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1항~4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의 근거로 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으므로 그 내용과 체계, 자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민간위탁이나 수탁기관에 대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과 (제10조) 지휘감독권, 그리고 (제12조) 처리사항 감사로 사고예방에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 시행착오만 없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4항)
제95조(사무의위임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12.2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0>.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0>.